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3일,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7. 1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 9. 3.)

상정·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

11. 21.) 상정·축조심사·의결(원안의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6.)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충권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8까지,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동 개정안 및 폐지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의 일부 조항을 이관하고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려는 내용임.
-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발생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고되어 국민들에게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지원금 공시 준수 의무 폐지를 통해 사업자들이 시장상황에 맞추어 기민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 차별 허용 및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 부여를 통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현 단말기 제조사 과점 시장 상황상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하더라도 큰 폭의 단말기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고, 사업자 간 과다 경쟁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현행 단말기유통법에는 지원금 규제 내용 외에도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조문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중 이관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는 조문 범위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면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 원안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법률 제 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